

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·청소년 부모빋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5년 6월 20일
복 지 건 설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고성미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6월 20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채무의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정의 목적,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안 제2조).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.
- 3)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안 제8조).
- 4) 정보제공 및 홍보, 비밀준수 등(안 제9조 및 안 제10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○ 본 조례안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아동·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가)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안 제2조제1호에서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 및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라 아동·청소년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.

※ 주요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·청소년의 범위	
법률	아동·청소년 정의
청소년기본법	9세 이상 24세 이하
청소년보호법	만 19세 미만
아동복지법	18세 미만

나) 구청장 책무(안 제3조)

-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수집인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.

다)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안 제8조).

- 법률지원을 위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, 지원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.
-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인지대,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

3) 검토 의견

-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(민법 제997조),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(민법 제1005조)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재산뿐만 아니라, 채무 또한 상속됨.

※ 상속 관련 법률 행위

법률행위(민법)	법률효과	절차
단순승인 (제1019조 제1항)	피상속인의 자산과 부채 등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(상속의 기본형태)	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
상속포기 (제1019조 제1항)	상속의 효력을 소멸시켜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	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(위 기간내 상속포기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)
한정승인 (제1019조 제1항)	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 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	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(위 기간내 한정승인 하지 아니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)
특별한정승인 ¹⁾ (제1019조 제3항)	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 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	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과실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내

- 본 조례안은 아동·청소년이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해야함에도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.
- 따라서 상속 채무로 인한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며,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본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하여 대상자 발굴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1) 특별한정승인”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함(「민법」 제1019조제3항).

이때 “중대한 과실”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함(대법원 2010. 6. 10. 선고, 2010다7904 판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